

원스토어의 채팅앱 및 소개팅앱에 대한 청소년 이용불가등급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원스토어는 2019년 8월 19일 아동·청소년을 성착취(성매매)로 알선·유인하고 음란물 유통에 이용되고 있는 채팅앱 및 소개팅앱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으로 연령등급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원스토어의 적극적 조치를 열렬히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경과

날짜	경과	세부내용
2019년 7월 17일	원스토어 내 연령등급 정책변경 고지	·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해 채팅앱/소개팅앱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변경 통지 · 자발적 등급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스토어 내에서 등급 변경 및 판매금지 통보
2019년 8월 19일	원스토어 내 연령등급 정책변경 시행	· 원스토어 내 채팅앱/소개팅앱에 대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변경 시행

2. 논평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74.8%는 채팅앱과 (37.4%) 랜덤채팅앱(23.4%)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로 유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채팅앱 및 소개팅앱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IT기술을 매개로 한 성매매 산업에 아동·청소년이 대거 유인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2019년 4월부터 일부 채팅앱/소개팅앱의 이용 연령 제한을 18세로 등록하고 실명 인증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채팅앱/소개팅앱들은 구글의 성인인증을 피해 원스토어로 대거 이동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채팅앱/소개팅앱들이 성매수에 알선·유인하는 주요 대상이 아동·청소년들이며, 성인인증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이들 채팅앱/소개팅앱들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불법 수익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원스토어는 원스토어 내의 채팅앱/소개팅앱 102개를 전수조사 하였다. 그 결과 원스토어는 이들 채팅앱/소개팅앱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하기로 결정, 채팅앱/소개팅앱 운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용등급 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 약관에 의거하여 원스토어 직권으로 등급을 변경하거나 판매 금지를 취한다는 적극적 조치의 입장을 밝혔고, 이를 2019. 8. 19. 부터 시행하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원스토어 측의 이러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하고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전히 애플을 기반으로 한 앱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소개팅앱의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이나 성인 인증단계가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선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진화·발전하고 있는 IT기술 매개의 성매매 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부적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선도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의 당연한 조치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끝>